

# 『2024년 3D융합안경테 제조기반 구축』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

한국 안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「2024년 3D융합안경테 제조기반 구축 사업 통합공고」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안경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4년 3월 29일

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

## 1 모집 개요

○ 「2024년 3D융합안경테 제조기반 구축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개요

세부사업명		지원내역	지원한도	모집규모
3D융합 안경테 제조 기반 구축	안경테 금형 제작 지원	- 3D 프린팅 기술융합 안경테 금형제작 - 기업당 안경테 금형 1벌 제작 지원	기업당 안경테 금형 1벌 지원	6개사 내외
	안경테 부품 제작 지원	- (제품개발 지원) 금속 안경테 및 부품 개발 지원(플라스틱 사출용 금형제작 제외) - (유턴기업 지원) 해외에서 국내로 유 턴하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지원 (전년도 해외업체 거래증빙 및 당해년 도 국내업체 부품제작 견적서 필수)	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	8개사 내외
※ 2개 사업 복수지원 가능하며,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한 개 사업만 선택 가능				

## 2 신청 및 접수

○ 접수기간 : 3.29.(금) ~ 4. 12.(금) 18:00 까지

○ 신청방법 : 이메일, 방문, 우편, 접수

- 방문 신청접수는 평일 09:00~18:00에만 가능

○ 접 수 처 :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전략연구팀, 전임 김학균(053-350-7857)

- (이메일 접수) harugun@koia.or.kr

- (우편접수)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169,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7층 전략연구팀

## (1) 안경테 금형 제작 지원

## 1. 모집 개요

- 목적 : 3D 프린팅 융합기술 활용을 통한 기업 애로기술 해결 및 안경테 제조 기술 경쟁력 강화
- 모집기간 : 3.29.(금) ~ 4. 12.(금) 18:00 까지
  - \* 방문 접수는 주중에만 가능
- 모집규모 : 6개사 내외
  - 안경 제조 및 안경테 관련 기업 6개사
- 추진내용 :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안경테 금형제작 지원
- 지원규모 :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안경테 금형 1벌 / 1개사
- 지원항목
  - 3D 금속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안경테 사출 금형제작 지원

## 2. 신청자격

- 지원기업 : 안경 제조 및 안경테 관련 기업
- 품목 : 안경테, 선글라스 등 패션아이웨어 제품
- 참가자격\*
  - 안경제조 및 안경테 관련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업(안경, 선글라스 완제품·부품생산기업 등)
  - \* 6개월 내 안경 분야와 관련된 거래내용 증빙이 가능한 기업
-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
  - 전년도(2023년) 수혜기업은 동일사업 지원 불가(격년으로 신청 가능)
  - 휴·폐업 중인 기업 또는 휴업,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
  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  -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  - ※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채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
  - 국세기본법,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, 상습, 체납 등으로 명단이

공개 중인 자

-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
- [근로기준법]에 의하여 임금체납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납사업주

### 3. 지원방식

- 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(기타 유의사항 참조)
  - \* 선정 후, 기업별 제품 데이터를 제출해야 진행 가능
- 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안경테 금형제작 지원
- 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항목 달성 후 기업이 제출한 결과보고서 증빙자료 등 검토
- 기업 증빙자료 제출 및 검증 기간 : 10월 ~ 12월

### 4. 제출자료

- 신청확약서(대표자 날인 필수)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- 지원 신청서(대표자 날인 필수)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- 사업계획서(대표자 날인 필수)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  - 사출 양산처 반드시 기입
  - 계획서에 맞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(기타 유의사항 참조)
  - 부득이한 사유\*가 아닌 경우,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 후, 계획변경에 의한 데이터 및 기타 자료 등 원안 변경 불가
  - \* 부득이한 사유 : 거래처의 휴·폐업 등 중대한 사정으로 변경 시 각종 사유서, 증빙자료 제출 필요
- 기업소개자료(대표자 날인 필수)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- 개인정보수집동의서(대표자 날인 필수)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- 국세 납세증명서 1부.
-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.

## 5. 기업평가 및 선정

### ○ 기업평가 및 선정방법

-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100% ‘서류평가’ 후 기업선정
  - \* 평가위원회 구성 : 7인 내외의 안경, 금형 기술분야 전문가, 회계사, 안경업계 관계자, 교수 등
- 서류심사점수 고득점순으로 최종 기업선정
- 최종 서류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,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기업 우선 선정

### ○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의견	평점
기업평가	1-1. 금형 활용 계획의 적합성	10
	1-2. 수행 기업의 사업수행 능력	30
개발 적절성	2-1. 금형제작의 필요성 및 시장분석	20
	2-2. 상품화 가능성	20
기대효과	3-1. 금형 지원 과급효과 및 성과 창출 가능성	20
합 계		100

## 6. 기타 유의사항

- ① 모든 사항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. 단, 경우에 따라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
  - \* 복잡 디자인 등으로 인해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 자부담으로 충당하며, 디자인 변경을 희망하는 기업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
- ② 기업별 제출한 계획에 따른 제품 데이터를 제출해야 금형제작 지원 가능  
(파일 형식 : .STP .IGS .x\_t / 3D 모델링 파일 / .STL .DWG 제외)
  - \* 미제출 시, 평가위원회에 따른 차순위 업체로 진행
- ③ 진흥원의 점수가 완료된 후 참여기업은 금형의 설치, 이동, 작동 등 직접 수행
- ④ 기업별 제출한 계획에 따라, 금형 제작일정을 최대한 고려. 다만, 일정이 중복되면 기업평가 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하여 안내
- 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미이행시 사업 포기로 간주
- ⑥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·변조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됨. 선정 결과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⑦ 참여기업의 부당행위 등 적발 시, 지원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고발 조치
- ⑧ 참여기업은 소유권에 상관없이 금형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.
  - \* 단,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출 기업은 양도 가능
- ⑨ 사업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## 7. 결과보고 및 기업지원 절차

### ○ 기업지원 절차

절 차	세부내용	관련 기관
<b>공고 및 신청·접수</b> 3.29.(금) ~ 4. 12.(금)	◦ 금형제작 지원 모집 공고(진흥원 홈페이지) ◦ 지원내용 안내 및 기업 모집 ◦ 이메일·우편·방문 접수(FAX불가)	진흥원
↓		
<b>업체 선정(평가위원회)</b> 4. 16.(화)~ 4. 18.(목)	◦ 평가위원회 개최(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)* ◦ 선정기업 통보 (진흥원 ⇒ 참여기업)	평가위원회
↓		
<b>협약체결일</b> ~ 4. 22.(월)	◦ 협약체결 및 안내(계획서에 따른 일정 협의)	진흥원
↓		
<b>금형제작 지원</b> 협약일 ~ 11월 말	◦ 업체별 제품 데이터 제출에 따라 순차적으로 금형제작 ※ 파일 형식 : .STP, .IGS	진흥원
↓		
<b>금형효과 및 만족도 조사</b> 11월 ~ 12월	◦ 지원내용, 지원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	진흥원

※ 세부내용 및 일정은 사업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 ○ 결과보고 및 제출 자료

- 최종 결과보고서, 만족도 조사 자료 각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- 지원성과 자료 제출 : 해당 지원을 통해 기업에서 달성한 성과측정 및 제출
-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각 1부.
- 결과물은 사진을 반드시 첨부

## (2) 안경테 부품 제작 지원

### 1. 모집개요

- 사업목적 : 부품 제작 지원을 통한 디자인 다변화 및 제품성 강화
- 모집기간 : 3.29.(금) ~ 4. 12.(금) 18:00 까지
- 모집규모 : 안경 제조 및 안경테 관련 기업 8개사 내외
- 추진내용 및 규모 : 안경테 부품제작 지원에 소요된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일부(80%)를 지원 (업체당 최대 500 만원 한도 내 지원)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2024. 10. 31.(화)
- 지원항목 : 제품의 차별성과 독창성 확보를 위한 금속 안경테 및 금속 부품 개발·제조일체

-[제품개발 지원] 금속 안경테 및 부품 개발 지원 (플라스틱 사출용 금형제작은 제외)  
-[유턴기업 지원] 해외 제조 부품을 국내 제조로 유턴하여 부품 제조하는 기업 지원  
(전년도 해외업체 거래증빙 및 당해년도 국내업체 부품제작 견적서 필수)

※ 부품 개발·제조공정 일괄 국내 제작 업체에 한함

### 2. 신청자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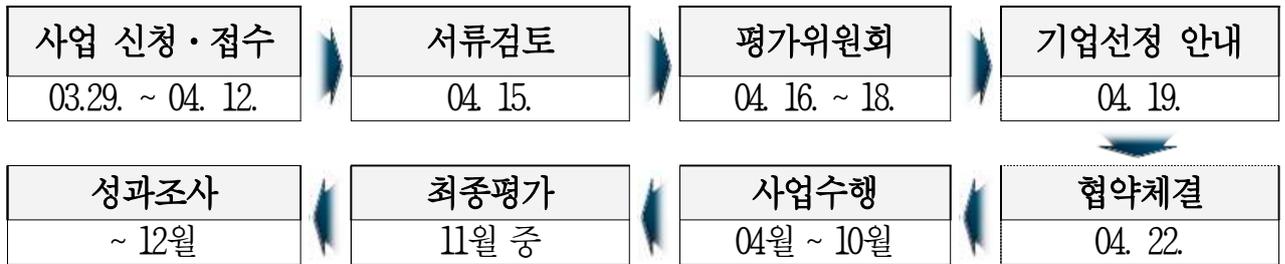
- 지원기업 : 안경 제조 관련 기업
- 품목 : 안경테, 선글라스 등 패션아이웨어 제품
- 참가자격\*
  - 안경제조 및 안경테 관련 사업자등록증 보유 기업(안경, 선글라스 완제품·부품생산기업 등)
  - \* 6개월 내 안경 분야와 관련된 거래내용 증빙이 가능한 기업
-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
  - 휴·폐업 중인 기업 또는 휴업, 폐업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
  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
  -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  - ※ 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
  - 국세기본법,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, 상습,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
  -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

단이 공표된 기업

- [근로기준법]에 의하여 임금체납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납사업주

### 3. 지원방식 및 절차

#### ○ 추진일정 및 절차



※ 상기일정은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#### ○ 지원관련 유의사항

- (지원방법) 선정기업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내용을 보고, 제작비용은 부품제작 완료 검수 후 진흥원이 선정기업에게 지급
- (지원비용)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지급
  - 안경테 부품 제작지원: 업체당 최대 500만원(자부담 20% 필수)
  - 최종결과물의 완성도 제고 및 고급+화를 위해 추가로 기업부담금 지출 가능
  - 기업별 총 지출비용 중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지급하지 않음
- (최종점검) 선정기업은 사업종료 후 5일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

### 4. 제출자료

가. 신청확약서(대표자 날인 필수)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
나. 지원신청서(대표자 날인 필수)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
다. 사업계획서(대표자 날인 필수)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
○ 계획서에 맞는 증빙자료 첨부 필수 (6. 기타 유의사항 참조)

○ 부득이한 사유\*가 아닌 경우,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 후, 계획변경에 의한 데이터 및 기타 자료 등 원안 변경 불가

\* 부득이한 사유 : 거래처의 휴폐업 등 중대한 사정으로 변경 시 각종 사유서, 증빙자료 제출 필요

라. 기업소개자료(대표자 날인 필수)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
마. 개인정보수집동의서(대표자 날인 필수)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
바. 국세 납세증명서 1부.

사.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.
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)
-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음
-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\*인 경우 지원취소 가능
  - \*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 제품에 대한 유사 지원 여부로 판단

## 5. 기업평가 및 선정

### ○ 기업평가 및 선정방법

-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100% ‘서류평가’ 후 기업선정
  - ※ 평가위원회 구성 : 7인 이상 10명 이내의 안광학산업 및 안경테 제조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
- 서류심사점수 고득점순으로 최종 기업선정
- 최종 서류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,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 기업 우선 선정
  - ※ 지원 예산 범위 내 후보기업 선정 (추후 선정기업이 사업수행도중 포기 및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지급가능)

### ○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항목	평가내용	배점
기업평가	1-1. 수행 기업의 사업수행 능력	15
	1-2. 안경테 부품 활용 계획의 적합성	15
개발 적절성	2-1. 안경테 부품제작의 필요성 및 시장분석	20
	2-2. 부품제작 지원 및 개발 내용	20
기대효과	3-1. 상품화 가능성	15
	3-2. 안경테 부품 지원 파급효과 및 성과 창출 가능성	15
소 계		100
우대가점	해외 제조부품을 국내 제조로 유턴하여 부품 제조하는 기업	5
합 계		105

※ [우대가점] : 전년도 해외업체 거래증빙 및 당해년도 국내업체 부품제작 견적서 증빙 필수

## 6. 기타 유의사항

- ① 사업계획서 작성 시 추진내용에 적합한 증빙자료(사업관련 견적서 등)를 필수적으로 제출 하여야 함 (**지원사업 일괄 국내 제작 업체에 한함\_국내기업 견적서 필수**)
- ② 모든 사항은 제출한 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. 수정 계획서 제출 시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
- ③ 선정기업의 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부당거래 행위 적발 시,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및 향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, 기타 제재.
- ④ 제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사업 포기로 간주
- ⑤ 선정기업은 **부품제작 공정과 관련된 서류(견적서, 도면 등)를 제출하여야** 하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, 위·변조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,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됨. 선정 결과는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에 대하여 신청기업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⑥ 참여기업의 부당행위 등 적발 시, 해당 사업 지원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, 고발 조치 등 엄벌
- ⑦ 참여기업은 소유권에 상관없이 부품제작에 투입된 재원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
- ⑧ 사업 공고문 등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

## 7. 결과보고

### ○ 결과보고 방법

-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
  - 계획대비 사업수행결과 확인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
  - ※ 안경테 제조공정간 거래계약 관련 증빙서류 검토 후 사업비 지출 예정  
(허위계산서 발행 등의 부당거래 행위 적발 시, 해당 사업 지원 취소 및 향후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, 기타 제재.)

### ○ 결과제출 자료

- 최종 결과보고서 1부. (별첨 양식 활용)
- 지원성과 자료 제출
  - 해당 지원을 통해 기업에서 달성한 성과측정자료 등
  - 안경테 부품제작 지원간 발생하는 지출증빙 서류 일괄 등
- 기타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자료 각 1부. 끝.